

【 9 】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9. 3.

제 출 자 : 양 주 시 장

□ 제안사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시행(일부 조항 공포후 6개월 또는 1년 경과후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과 조례로 정하도록 추가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그 밖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을 위한 특정구역 지정시 도지사와 사전 협의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함. (안 제6조)
- 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안 제11조)
- 다. 전광판 등을 이용한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의 시간당 표출비율 개정(25% → 20% 범위내)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함. (안 제18조)
- 라.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회를 구성할 시 위원의 선정기준이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원안에 의도를 상당히 저해하는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부패영향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을 구체화하고자 함. (안 제20조)

- 마.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고자 함. (안 제32조)
- 바. 광고물 실명제에 관한 관련규정이 신설되어 표시방법·표시시기 등의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안 제34조의2)
- 사.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한금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으로 상향 조정되고 위반사항별 부과기준의 개정과 부과대상자의 경우 옥외광고업자의 의무 규정 위반자, 광고물 실명제 위반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부과기준 등을 개정하고자 함. (안 제36조, 별표5)
- 아. 특정구역내 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행·재정지원과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등에게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광고물 정비사업 등을 활성화하고자 함. (안 제37조의2)
- 자.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 개선하고자 함. (안 제12조·제23조·제24조·제31조)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① 시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조례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공보·인터넷 홈페이지·일간신문 또는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조례로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주민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의2제3항 및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주관으로 도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 지역내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에 대한 의견 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휴지통
2. 벤치

제12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 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를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③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 · 교통 · 환경 · 도시계획 · 건축 · 디자인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 · 옥외광고 · 교통 · 환경 · 도시계획 · 건축 · 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대학 (교)의 조교수 이상인 자
3. 건축사회 · 옥외광고협회 또는 미술협회(지부, 지회 포함)에서 추천하는 자

동조제4항제1호중 “부위원장” 를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로 하며, 동항제5호중 “영 제34조제4항” 을 “영 제33조제8항” 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중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를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거나 제25조 규정에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로 한다.

제2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제31조본문 중 “법 제10조제3항” 을 “법 제10조제6항” 으로 한다.

제32조 제목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등)” 을 “(옥외광고업의 등록)” 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과 “제4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④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 제5항 · 제6항에 따라 영업소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영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등록증(잘 보이는 곳에 게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별지 제16호서식)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 · 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이하 이 조에서 “실명제 표시” 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정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27조제1항에 의한 교통시설의 내부광고와 영 제28조제3항에 의한 도시철도 차량광고
2. 허가·신고기간의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중 법 시행일 ('08. 12. 22.)이후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명제 표시를 권역·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설명제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규 광고물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간판시범사업지역, 특정구역 고시지역, 도심지역 등
2. 기타 전지역

⑤ 설명제 표시는 별지 제7호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스티커형 인식마크로써 하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계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시 및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필증 교부시 배부하여야 한다.

⑦ 기타 광고물 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한다.

제35조제1항의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36조제1항의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7조의2(광고물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① 시장은 영 제12조의 의해 폐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정구역내의 광고물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의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광고물 등의 설치·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의해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 관 실·과		건 축 과
임 안 자	설·과장 직위·성명	건 축 과 장 김 용 환
	담당·팀장 직위·성명	미관정비팀장 윤 석 호
	담당자 직위·성명	배 민 기

【별표 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제35조제1항 관련)

가. 일반 옥외광고물

(단위 : 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준	수수료
1. 가로형간판			
가. 일반가로형간판 (나항 외의 간판)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00 1,000
나. 건물 측·후면의 4층이상 판류 이용간판 (영 제15조제4호)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000 2,000
2. 세로형간판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0 1,000
3. 돌출간판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제곱미터 이하 ·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이·미용업소 및 의료 기관·약국 표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000 1,000 4,000
4. 공연간판			
가. 벽면이용간판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형간판 가항과 같음 	
나. 지주이용간판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주이용간판과 같음 	
5. 옥상간판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000 5,000
6. 지주이용간판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000 2,000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뛰우는 것	개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간판에 준함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15,000

(단위 : 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준	수수료
8.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00 1,000
9. 교통시설(지하도)이용 광고물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제곱미터 이하 · 5제곱미터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9,000 10,000
10. 교통수단이용광고물 가. 비행선 나. 비행기 · 선박 양측면 다. 차량 양측면	대		400,000
	대		10,000
	대		2,000
11. 선전탑	개		4,000
12. 아취광고물	개		4,000
13. 창문이용 광고물	개		4,000
14. 현수막 가. 현수막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00 1,000
나. 현수막 게시시설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7,000 1,500
15. 벽 보	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매당 	3,000
16. 전 단	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매당 	3,000
17. 광고물등 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 조명을 하는 광고물을 제외)	개	<p>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p>	

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단위 : 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준	수수료
1. 차량탑재영상광고	대		350,000
2. 공중전화부스이용 광고	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3. 홍보탑광고	개		20,000
4. 벽면이용광고	개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0 2,000

* 광고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에 의거 표시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일반
옥외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 수수료의 징수방법

- (1)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
을 적용한다. (영 제9조 제1항 관련)
 - 광고물 등의 규격·위치·장소변경은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 (2)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영 제9조 제3항 관련)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36조제1항 관련)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액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8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13만원
- 0.6 ~ 0.8제곱미터 이하		22만원
- 0.9 ~ 1.0제곱미터 미만		32만원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35만원 이상 65만원 미만	
- 1.0 ~ 1.3제곱미터 이하		42만원
- 1.4 ~ 1.6제곱미터 이하		50만원
- 1.7 ~ 2.0제곱미터 미만		64만원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65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 2.0 ~ 2.3제곱미터 이하		75만원
- 2.4 ~ 2.6제곱미터 이하		100만원
- 2.7 ~ 3.0제곱미터 미만		129만원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 13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0.5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130만원 + 15만원
(2) 그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8만원
- 0.6 ~ 0.8제곱미터 이하		12만원
- 0.9 ~ 1.0제곱미터 미만		14만원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1.0 ~ 1.3제곱미터 이하		25만원
- 1.4 ~ 1.6제곱미터 이하		33만원
- 1.7 ~ 2.0제곱미터 미만		49만원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2.0 ~ 2.3제곱미터 이하		58만원
- 2.4 ~ 2.6제곱미터 이하		67만원
- 2.7 ~ 3.0제곱미터 미만		79만원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 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0.5제곱미터당 8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80만원 + 8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 과 액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8만원 12만원 14만원
- 1.0제곱미터 이하		
- 1.1 ~ 2.0제곱미터 이하		
- 2.1 ~ 3.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22만원 25만원 32만원
- 3.0 ~ 3.7제곱미터 이하		
- 3.8 ~ 4.4제곱미터 이하		
- 4.5 ~ 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42만원 58만원 75만원
- 5.0 ~ 6.0제곱미터 이하		
- 6.1 ~ 8.0제곱미터 이하		
- 8.1 ~ 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 을 가산한 금액 이하	80만원 + 15만원
(2) 자주 · 지정계시대 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8만원 12만원 14만원
- 1.0제곱미터 이하		
- 1.1 ~ 2.0제곱미터 이하		
- 2.1 ~ 3.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22만원 25만원 32만원
- 3.0 ~ 3.7제곱미터 이하		
- 3.8 ~ 4.4제곱미터 이하		
- 4.5 ~ 5.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42만원 58만원 75만원
- 5.0 ~ 6.0제곱미터 이하		
- 6.1 ~ 8.0제곱미터 이하		
- 8.1 ~ 1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 을 가산한 금액 이하	80만원 + 15만원
(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8만원 12만원 14만원
- 1.0제곱미터 이하		
- 1.1 ~ 2.0제곱미터 이하		
- 2.1 ~ 3.0제곱미터 미만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 과 액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 ~ 3.7제곱미터 이하 - 3.8 ~ 4.4제곱미터 이하 - 4.5 ~ 5.0제곱미터 미만	·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20만원 25만원 30만원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 ~ 6.0제곱미터 이하 - 6.1 ~ 8.0제곱미터 이하 - 8.1 ~ 10.0제곱미터 미만	·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42만원 58만원 75만원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4) (1) 내지 (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 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 ~ 10장이하 - 11 ~ 20장이하 - 21장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 ~ 10장이하 - 11 ~ 20장이하 - 21장이상	·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 을 가산한 금액 이하 ·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 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80만원 + 15만원 장당17천원 장당25천원 장당42천원 장당25천원 장당33천원 장당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 ~ 10장이하 - 11 ~ 20장이하 - 21장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 ~ 10장이하 - 11 ~ 20장이하 - 21장이상 2. 법 제11조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 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상황 변경신고, 등록 증 반납,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가. 30일미만 나. 30일이상 90일미만 다. 90일이상 180일미만 라. 180일이상 1년미만 마. 1년이상	·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장당 8천원 장당17천원 장당25천원 장당25천원 장당33천원 장당50천원 ·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5만원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액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5만원 45만원 100만원
5.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설명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이하까지 계산하되, 계산된 과태료의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벼린다.
- (3) 입체형 · 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4) 입간판 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 등은 500만원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반복 ·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의2】

광고물 설명제 스티커형 인식마크 (제34조의2 관련)



(허가 경우)



(신고 경우)

■ 인식마크 재질 및 규격

- 재 질 : 내구성이 강한 PVC캘, 메탈 등
- 규 격 : 가로 5cm × 세로 5cm

■ 표기 내용

예) 첫째줄 : 2009 (허가·신고 낸도 표기)

둘째줄 : 1-0001, 2-0001 (허가·신고구분 및 일련번호 표기)

셋째줄 : 양주시, 회천3동 등 (허가·신고 처리 읍·면·동 표기)

* 참고 : 처리 읍·면·동 코드번호

시(양주1동) : 60, 백석읍 : 25, 은현면 : 26, 남면 : 27,

광적면 : 28, 장흥면 : 29, 양주2동 : 33, 회천1동 : 34,

회천2동 : 35, 회천3동 : 36, 회천4동 : 37.

네째줄 ***Yangju*** (양주시 로고 표기)

【별지 제1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m²)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안)
<p>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① 시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p>	<p>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① 시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조례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공보·인터넷 홈페이지·일간신문 또는 시군구의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조례로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주민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5조의2제3항 및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이 그 주관으로 시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 지역내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p> <p>① 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의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휴지통, 벤취, 교통상황정보안내판, 도시보행자안내표지판 2. 그 밖의 공공시설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편의시설물 	<p>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p> <p>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의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휴지통 2. 벤치

현 행	개 정(안)
<p>② 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 중 영 제26조제3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및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p>	<p>② (삭제)</p>
<p>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 표시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삭제)</p>
<p>제12조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p> <p>① (생략)</p> <p>② 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제1항의 창문이용 광고물은 건물 3층 이하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표시하여야 한다.</p> <p>2. ~ 4. (생략)</p>	<p>제12조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삭제)</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p> <p>① ~ ③ (생략)</p> <p>④ 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각호와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p> <p>1. 시간당 표출비율의 25퍼센트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p> <p>2.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의 입법예고, 일반 공익광고(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p>	<p>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를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p>

현 행	개 정(안)
<p>또는 국정홍보처장이 의뢰하는 광고를 말한다), 도정홍보 및 시정홍보를 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제20조(광고물관리 심의 위원회의 구성)</p> <p>① ~ ② (생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도로교통·환경·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2인</p> <p>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2인</p> <p>3. 기타 광고물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견을 갖춘자 2인</p> <p>④ (생략)</p> <p>1.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한다.</p> <p>2. ~ 4. (생략)</p> <p>5. 소위원회의 회의시작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0조(광고물관리 심의 위원회의 구성)</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옥외광고·도로·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p> <p>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자</p> <p>3. 건축사회·옥외광고협회 또는 미술협회(지부,지회포함)에서 추천하는 자</p> <p>④ (현행과 같음)</p> <p>1.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p> <p>2. ~ 4. (현행과 같음)</p> <p>5. 제33조제8항</p> <p>.....</p>
<p>제23조(안전도검사)</p> <p>① (생략)</p> <p>② 시장은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p>	<p>제23조(안전도검사)</p> <p>① (현행과 같음)</p> <p>②</p>

현 행	개 정(안)
<p>을 그 소속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그 밖에 관계 공무원 중에서 <u>지정하여</u> <u>야 한다.</u></p>	<p>..... <u>지정하거나</u> <u>제25조 규정에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u> <u>수 있다.</u></p>
<p>제24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건물부지 밖에 표시하는 지주이용 간판</u> 3. (생략) 	<p>제24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u> <u>주이용 공연간판</u> 3. (현행과 같음)
<p>제31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u>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u> <u>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u> <u>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u> <u>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u> <u>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u> <u>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u></p>	<p>제31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u>제10조제6항</u></p> <p>.....</p> <p>.....</p> <p>.....</p> <p>.....</p>
<p>제32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등)</p> <p>① ~ ② (생략)</p> <p><신 설></p> <p><신 설></p>	<p>제32조(옥외광고업의 등록)</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 제3항에 따 라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날 로부터 7일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 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 다.</p> <p>④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 제5항·제6 항에 따라 영업소안에 다음 각호의 서 류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안)
<신 설>	<p>제34조의2(광고물 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이하 이 조에서 "설명제 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정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27조제1항에 의한 교통시설의 내부광고와 영 제28조제3항에 의한 도시철도차량광고 2.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 중 법 시행일(08.12.22) 이후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설명제표시를 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안)
	<p>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명제 표시를 권역·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규 광고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간판시범사업지역, 특정구역 고시지역, 도심지역 등 2. 기타 전지역 <p>⑤ 설명제 표시는 별지 제7호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스티커형 인식마크로써 하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p> <p>⑥ 제5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시 및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필증 교부시 배부하여야 한다.</p> <p>⑦ 기타 광고물 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p>
<신 설>	<p>제37조의2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① 시장은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p>

【별표 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제35조 제1항 관련)

현 행				개 정(안)			
가. 일반 옥외광고물				가. 일반 옥외광고물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준	수수료 (단위 : 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준	수수료 (단위 : 원)
1. 가로형간판 가. 일반가로형간판 (나항 외의 간판)	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1. 가로형간판 가. 일반가로형간판 (나항 외의 간판)	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나. 건물 측후면의 4층이상 판류 이용간판 (영 제15조제4호)	개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0 2,000	나. 건물 측후면의 4층이상 판류 이용간판 (영 제15조제4호)	개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0 2,000
2. 세로형간판	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1,000	2. 세로형간판	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1,000
3. 돌출간판	개	· 3.5제곱미터 이하 ·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아·미용업소 및 의료 기관·약국 표지등	15,000 1,000 4,000	3. 돌출간판	개	· 3.5제곱미터 이하 ·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아·미용업소 및 의료 기관·약국 표지등	15,000 1,000 4,000
4. 공연간판 가. 벽면이용간판 나. 지주이용간판	개	· 가로형간판 가항과 같음 · 지주이용간판과 같음		4. 공연간판 가. 벽면이용간판 나. 지주이용간판	개	· 가로형간판 가항과 같음 · 지주이용간판과 같음	
5. 옥상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5,000 5,000	5. 옥상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5,000 5,000
6. 지주이용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5,000 2,000	6. 지주이용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5,000 2,000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뛰우는 것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개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15,000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뛰우는 것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개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15,000 옥상간판에 준함

현 행				개 정(안)			
(단위 : 원)				(단위 : 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준	수수료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준	수수료
8.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8.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나. 전주가로등주	개	· 10개 이하 · 10개 초과시 5개당 가산	4,000 2,000				
9. 교통시설(지하도) 이용 광고물	개	· 5제곱미터 이하 · 5제곱미터 초과	9,000 10,000	9. 교통시설(지하도) 이용 광고물	개	· 5제곱미터 이하 · 5제곱미터 초과	9,000 10,000
10. 교통수단이용광고물 가. 비행선	대		400,000	10. 교통수단이용광고물 가. 비행선	대		400,000
다. 비행기선박 양측면	대		10,000	다. 비행기선박 양측면	대		10,000
나. 차량 양측면	대		2,000	나. 차량 양측면	대		2,000
11. 선전탑	개		4,000	11. 선전탑	개		4,000
12. 아취광고물	개		4,000	12. 아취광고물	개		4,000
13. 창문이용 광고물	개		4,000	13. 창문이용 광고물	개		4,000
14. 현수막 가. 현수막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14. 현수막 가. 현수막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나. 현수막 게시시설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7,000 1,500	나. 현수막 게시시설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7,000 1,500
15. 벽 보	매	· 50매당	3,000	15. 벽 보	매	· 50매당	3,000
16. 전 단	매	· 1,000매당	3,000	16. 전 단	매	· 1,000매당	3,000
17. 광고물등 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을 제외)	개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17. 광고물등 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을 제외)	개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현 행				개 정(안)			
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준	수수료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준	수수료
1. 차량탑재영상광고	대		350,000	1. 차량탑재영상광고	대		350,000
2. 공중전화부스이용광고	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2. 공중전화부스이용광고	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3. 홍보탑광고	개		20,000	3. 홍보탑광고	개		20,000
4. 벽면이용광고	개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0 2,000	4. 벽면이용광고	개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0 2,000

* 광고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에 의거 표시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일반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 수수료의 정수방법

- (1)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영 제9조제1항 관련)
 - 광고물등의 규격·위치·장소변경은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 (2)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영 제9조제3항 관련)

* 광고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에 의거 표시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일반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 수수료의 정수방법

- (1)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영 제9조제1항 관련)
 - 광고물 등의 규격·위치·장소변경은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 (2)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영 제9조제3항 관련)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 (제36조 제1항 관련)

현 행			개 정(안)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액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액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 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 8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 35만원 이상 65만원 미만 · 65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 13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283 (2) 그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2) 그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8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현 행

개 정(안)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액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액
나. 현수막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5만원 7만원 9만원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8만원 12만원 14만원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13만원 15만원 19만원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22만원 25만원 32만원
- 3.0~3.7제곱미터 이하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
- 5.0~6.0제곱미터 이하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2) 지주·지정계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2) 지주·지정계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5만원 7만원 9만원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8만원 12만원 14만원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13만원 15만원 19만원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22만원 25만원 32만원
- 3.0~3.7제곱미터 이하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
- 5.0~6.0제곱미터 이하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5만원 7만원 9만원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8만원 12만원 14만원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 2.1~3.0제곱미터 미만		

현 행			개 정(안)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액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액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12만원 15만원 18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20만원 25만원 30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
(4) (1) 내지 (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4) (1) 내지 (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 장당 5천원 이상 3만원 이하	장당10천원 장당15천원 장당25천원 장당15천원 장당20천원 장당30천원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 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장당17천원 장당25천원 장당42천원 장당25천원 장당33천원 장당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 장당 3천원 이상 3만원 이하	장당5천원 장당10천원 장당15천원 장당15천원 장당20천원 장당3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장당8천원 장당17천원 장당25천원 장당25천원 장당33천원 장당50천원

현 행			개 정(안)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액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액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상황 변경신고, 등록증 반납,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가. 30일미만 나. 30일이상 90일미만 다. 90일이상 180일미만 라. 180일이상 1년미만 마. 1년이상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9만원 49만원 99만원 199만원 299만원	가. 30일미만 나. 30일이상 90일미만 다. 90일이상 180일미만 라. 180일이상 1년미만 마. 1년이상	·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5만원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5만원 45만원 100만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5만원 45만원 100만원
			5.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설명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현 행	개 정(안)
<p>※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p> <p>(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제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p> <p>(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 2자리 이하는 절사한다.</p> <p>(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 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 다.</p> <p>(4) 입간판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해당 과태료 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 고물 등은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p> <p>(5) 최초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p>	<p>※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p> <p>(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제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p> <p>(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이하까지 계산하되, 계산된 과태료 의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p> <p>(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 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 다.</p> <p>(4) 입간판 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500만원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다.</p> <p>(5)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 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p>